

## 초안산근린공원(도봉) 조성

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다가옴에 따라 초안산산근린공원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.

### 예산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2013결산	2014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3,162	1,321	4,936	3,615	273%

### 사업설명

#### 사업목적

-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다가옴에 따라 초안산근린공원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

#### 사업근거
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
  -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·관리한다.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(도시·군계획시설의 실효 등)
  -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

#### 사업내용

- 위 치 : 도봉구 창동 일대
- 규 모 : 491,202㎡ (토지보상 491,202㎡, 조성공사 398,000㎡)
- 사업기간 : 2001 ~ 2020년

- 사업내용 : 공원용지 보상매입 및 공원조성
- 총사업비 : 145,390백만원 (투자심사 금액)

2015년도 사업계획

- 위 치 : 도봉구 창동 일대
- 사업규모 : 11,105㎡ (8필지)
- 사업내용 : 토지보상 (주 산책로 및 난개발 우려지)
- 소요예산 : 4,936백만원 (보상비)

추진경위

- 1977. 7. 9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
- 2009. 7. 23 : 공원조성계획 수립
- 2014. 3. : 실시계획인가
- 2014. 2. ~ 8. : 공원조성사업 시행

2015년도 예산

구 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3,162	1,321	4,936	3,615
시 설 비	3,162	1,321	4,936	3,615
기본조사설계비				
실시설계비				
보 상 비	3,162	921	4,936	4,015
공 사 비		400	-	△400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- 보상비 : 4,936백만원
  - 보상비 : 토지 8필지(11,105㎡) 4,912,300천원
  - 감평수수료 : 16,899천원
  - 측량수수료 : 6,256천원

□ 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 - 사업계획수립 → 사업시행인가 → 손실보상공고 → 감정평가 → 보상협의 → 완료
- 계약체결
  - 감정평가 완료후 토지주와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

□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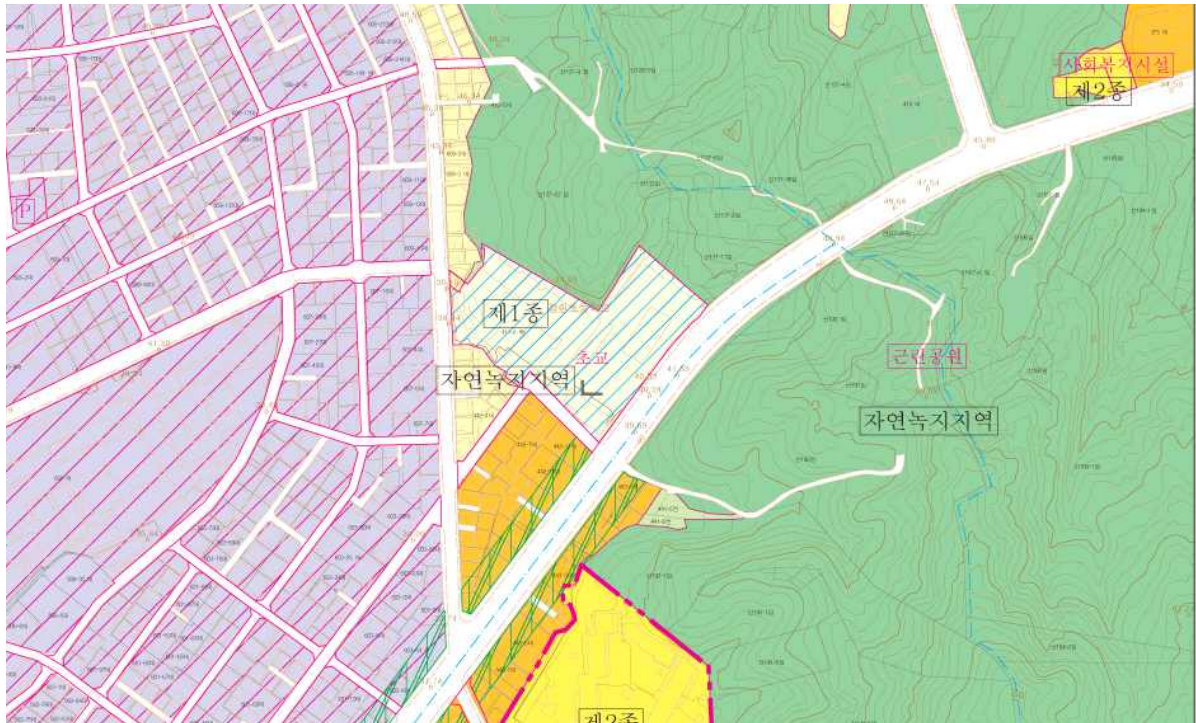
- 추진방향
  - 토지보상 조속 추진
  - 토지주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
- 추진일정 (단위 : 백만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4,936	
사업계획수립	2015. 1		방침수립
사업시행인가	2015. 2		공보게재 (14일이상)
손실보상공고	2015. 3~4		공보게재 (14일이상)
감정평가	2015. 5~6	17	감정평가실시(3개업체)
보상협의	2015. 7~8		보상협의
보상완료	2015. 9~10	4,919	계약 및 보상금 지출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		푸른도시국	공원조성과	생활공원팀장	유영봉 (2133-2066)

**참 고 자 료**

도시계획도



현황사진 (원경)

